

기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약관

1. 머리말

이 약관은 고객에게 계좌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과 은행간에 적용되는 계약조건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이 약관의 목적은 계좌 및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로부터 받은 기밀정보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 당사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약관의 일부 규정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서, 명시된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그 국가에 특수한 추가적인 계약조건이 필요하며, 그러한 사항은 그 국가에 대한 현지약관에 규정됩니다. 이 약관과 무역거래와 관련된 약정 사이에 상충이 있는 경우, 무역거래에 관련된 약정이 우선합니다.

2. 기밀정보의 보호

정보를 수령하는 당사자("수령당사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제공당사자")의 기밀정보를 이 약관에 따라 기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제공당사자의 기밀정보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성격의 수령당사자 자신의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울이는 정도와 최소한 같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기밀정보의 이용 및 공개

제공당사자는 수령당사자에게, 제공당사자의 기밀정보를 허용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수령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기밀정보를 이 약관에서 허용된 한도 내에서만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습니다.

4. 기밀유지에 대한 예외

이 약관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밀정보의 이용과 공개에 대한 제한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 수령당사자나 그 계열사, 또는 그들의 대표자가 이 약관을 위반한 부정행위(부작위를 포함)의 결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정보로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정보, (ii) 해당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수령당사자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 (iii) 제공당사자의 기밀정보를 참조하지 않고 수령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iv) 제공당사자의 권한 있는 책임자가 수령당사자가 공개할 수 있다고 서면으로 동의한 정보, 또는 (v) 익

명화 및/또는 종합화된 정보.

5.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

5.1 계열사 및 대표자. 수령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기밀정보를 수령당사자의 계열사, 그러한 기밀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수령당사자 및 그 계열사의 대표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허용된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공개가 허용됩니다. 수령당사자는 이 약관 제5조1항에 따라 공개된 제공당사자의 기밀정보가 수령당사자의 계열사 및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해당 기밀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허용된 목적만을 위해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2 기타 공개. 은행수령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i) 고객의 기밀정보를 고객이 지정하는 당사자(예컨대 고객의 사무지원부서) 및 고객 계열사에게 공개하는 행위, (ii) 고객의 기밀정보에 관한 기밀유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에게 계좌운영과 서비스공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기밀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iii) 은행과 은행 계열사에서 고객과 고객 계열사를 위해 계좌 개설을 지원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고객 기밀정보를 다른 은행수령자에게 이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iv) 고객의 기밀정보에 관한 기밀유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무역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권리를 양수, 참가 또는 수급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5.3 지급 대사. 고객이 은행에 자신의 계좌로부터 제3자의 계좌로 자금 이체를 지시할 때 그 제3자가 지급 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행은 그 제3자에게 해당 고객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그리고 지급 대사를 하기 위해 제3자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고객 기밀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5.4 법률 및 규제에 의한 공개. 수령당사자(은행이 수령당사자인 경우 은행수령자 및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당사자의 기밀정보를 법원, 판정기관, 규제·감독 및 과세 당국, 기타 정부기관에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적 절차, 기타 외국 또는 국내의 법률상 또는 규제상의 의무 또는 요구나, 그들과 국내외의 정부기관 또는 둘 이상의 국내외의 정부기관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6. 보유 및 삭제

계좌의 해지, 서비스 제공의 종료 또는 무역거래의 종료 시에 각 고객과 은행수령자는 본 약관상의 기밀유지와 보안유지 의무에 따라, 법률, 규제, 감사 및 내부 준법감시 목적을 위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내부기록 관리정책에 따라 다른 당사자의 기밀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밀정보를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7. 개인정보보호.

7.1 법규 준수. 수령당사자는 계좌 및 서비스의 제공 또는 수령 및 무역거래와 관련한 제공당사자의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현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기밀유지와 보안. 은행은 허가되지 않거나 불법적인 처리 및 우발적인 파괴나 손실에 대비해 자신이 수탁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보안수단을 실행하고, 은행 계열사 및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7.3 목적의 제한. 고객은 은행이 고객개인정보를 이 약관에 따라 그리고 허용된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 및 기간 내에서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며 이를 지시합니다. 은행은 고객이 명시적으로 수권하거나 지시하지 않는 한 고객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7.4 해외에서의 공개. 고객은 이 약관 제5조(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 따른 공개 과정에서, 제공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은행의 설립지국 또는 고객의 소재지국의 보호 수준만큼 높은 수준의 정보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에게 공개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7.5 동의 및 보증. 고객이 은행에 의해 처리되는 고객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인 경우, 고객은 은행이 이 약관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하는 모든 고객개인정보를 처리함에 동의합니다. 은행이 다른 정보주체(예컨대 고객의 직원 또는 관련 당사자)에 대해 고객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범위 내

에서, 이 약관에 기술된 것과 같이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은행의 처리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하였고, 그 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며, 장래에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그런 통지를 제공하거나 그런 동의를 얻을 것임을 보증합니다. 나아가, 고객은, 이러한 동의가 허용된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동안 해당 정보주체에 의하여 허용되었음을 보증합니다. 당사자들은,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법률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은행 또는 고객개인정보를 수령한 개인의 적법한 이익(이러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 자유, 혹은 적법한 이익을 보다 중대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은행이 호주, 체코 공화국 및/또는 슬로바키아에서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개인에 관련된 정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기의 동의를 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동의합니다.

7.6 직원 신뢰성 및 교육. 은행은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할 은행직원의 신뢰성을 보장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련된 은행직원이 개인정보의 관리, 보호 및 취급과 관련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7.7 감사 은행은 고객이 이 약관 제7.2조(기밀유지와 보안)에 따른 은행의 의무 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본 제7조 7항의 어떤 부분도 제3자에 대한 은행의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은행이 제공해야 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8. 보안사고

은행이 보안사고를 인지하는 경우, 보안사고의 효과를 자신의 내부규정 및 절차,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하고 개선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법률상 또는 규제상의 제약이 없고 또한 은행의 조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은행은 보안사고를 인지한 후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모든 보안사고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보안사고에 의해 침해를 당한 정보주체와 은행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해당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규제 당국과 개인에 대한 통지의무는 고객에 있음에 동의합니다. 은행은 합리적인 정보와 지원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을 도움으로써, 정보주체와 규제당국에 대한 은행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은행이나 고객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언론이나 매체에 보안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의 성명을 거론하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진술 또는 논평을 할 수 없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 유럽경제지역(EEA), 이스라엘, 저지, 마카오 및 모로코 - 특별 규정

이 약관 제9조의 다음 규정들은 은행이 유럽경제지역, 이스라엘, 저지, 마카오 또는 모로코에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9.1 동의를 철회.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는 자발적인 것이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가 철회되고, 은행에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처리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면, 은행은 계좌 및 서비스의 제공과 무역거래를 계속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2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들은, 요청을 통해 무료로, 직접 마케팅을 포함한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과 관련된 공개 주체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반대할 수 있으며, 자신과 관련된 제공당사자의 개인정보에 접속 및 수정하거나 현지법 및 그 조건을 따라 그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자동화된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은행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 당국, 개인정보 처리 기록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고객의 계좌 관리자에게 연락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9.3 정보 처리자. 고객 개인정보와 관련한 은행의 처리로 은행이 고객을 위한 정보처리자로 간주되는 경우, 은행은 해당 정보와 관련한 고객의 지시에 근거해서만 행동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지시는 이 약관 제7.3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9.4 정보와 지원.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와 지원을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하여, 다른 당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정보 보호 당국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또는 실행 통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5 수령자. 불가리아, 체코 공화국,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및 스페인에서의 은행 고객은 고객의 계좌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고객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었던 은행 계열사, 은행의 제3자 서비스 공급자 및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9.6 유럽경제지역(EEA) 및 Jersey 이외 지역에서의 제공. 은행이 유럽경제지역에서 설립된 경우, 은행은

은행 또는 은행을 대리하는 당사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국"에 소재한 제3자 서비스 공급자 또는 은행 계열사에게 전달함에 있어 지침 95/46/EC의 제4장(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제공)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집니다. 이는 은행이 현지의 법률이나 업무방식, 또는 관련 정부 당국에 의해 그런 동의를 얻도록 요구되지 않는 한 그 지침(수정입법 내지 대체입법을 포함)이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국가의 관련 현지 법률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9.7 은행은 이 약관 제9조 및 제9.5조의 국가 목록에 다른 국가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 약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수정의 효력은 이 약관의 수정본을 고객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최대 30일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

10.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는 '계좌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 약관' 또는 아래에서 정의한 바와 같습니다.

"계열사"는 문맥에 따라 은행의 계열사 또는 고객의 계열사를 의미합니다.

"익명화 및/또는 종합화된 정보"는 계좌 및 서비스 또는 무역거래의 제공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수령당사자가 수령하거나 생성한 제공당사자에 관한 정보로서, 모든 개인식별수단이 삭제되거나 다른 데이터와 함께 종합되어 제공당사자, 제공당사자의 계열사 또는 자연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은행 계열사"는 Citibank, N.A.와 Citigroup Technologies, Inc.를 포함하여, 은행, 은행의 지점 및 주사무소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은행, 은행의 지점 및 주사무소에 의해 지배되거나, 은행, 은행의 지점 및 주사무소와 함께 타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존하는 또는 장래의 모든 단체를 의미합니다.

"은행개인정보"는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계좌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또는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은행, 은행 계열사, 그들의 대표자로부터 수령한 정보주체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의미합니다. 은행개인정보는 현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한, 성명과 연락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은행수령자"는 은행, 은행의 계열사 및 그들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약관"은 본 기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약관을 의미합니다.

"기밀정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제공당사자가 고객이나 고객 계열사, 또는 그들의 대표자인 경우: 모든 고객 개인정보, 고객의 은행 계좌 세부사항, 거래 정보, 공개 시점에 고객에 의해 기밀로 지정되거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기밀이나 전속적인 성격이 있다고 간주할 기타 정보를 포함하여, 고객이나 고객 계열사 또는 그들의 대표자 또는 관련 당사자와 관련된, 계좌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또는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수령자가 수령한 정보.

(B) 제공당사자가 은행이나 은행 계열사, 또는 그들의 대표자인 경우: 은행 개인정보, 은행의 상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 그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약관, (소프트웨어, 보고서의 양식 및 포맷 및 온라인 컴퓨터 화면을 포함한) 기술, 가격 책정 정보, 내부 정책, 운영 절차, 공개 시점에 은행에 의해 기밀로 지정되거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기밀이나 전속적인 성격이 있다고 간주할 기타 정보를 포함하여, 은행이나 은행 계열사 또는 그들의 대표자와 관련된, 은행으로부터의 계좌 및 서비스를 수령하는 것과 관련하여 또는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고객, 고객 계열사 및 그들의 대표자가 수령하거나 접근한 정보.

"지배"는 어떤 조직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나 계약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조직의 경영 및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객 계열사"는 고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고객에 의해 지배되거나 고객과 함께 타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단체 및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고객 개인정보"는 고객에 대한 계좌 및 서비스의 제공이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고객, 고객 계열사 및 계열사 대표자와 관련 당사자로부터 은행에 의해 또는 은행을 대신해 수령된,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의미합니다. 고객 개인정보는 현지 개인정보 보호 법률 하에서 개인정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성명, 연락처, 신원 식별 정보, 국적 및 거주 정보, 납세자 확인 정보, 성문(음성분석),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은행 계좌 및 거래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특정한 신원 식별 번호나 자신의 물리적, 생리학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에 특수한 하나 이상의 요소를 확인함으로써 식별되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현지 개인정보 보호 법률 하에서 이에 가장 근접한 상당하는 용어가 뜻하는 바를 의미합니다. 이 약관의 목적상, 데이터 주체는 고객, 고객 계열사, 은행, 데이터 주체의 직원, 관련 당사자, 고객, 공급자, 송금자, 자금수령자 또는 기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공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제공당사자 개인정보"는 상황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 또는 은행 개인정보를 의미합니다.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통신, 결제나 지불 시스템, 중개 은행 및 환거래 은행을 포함하는, 지불 시스템 인프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3자를 의미합니다.

은행의 고객 기밀정보 이용과 관련한 "허용된 목적"은 다음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A) 계좌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 약관에 따른 고객에 대한 계좌 및 서비스의 제공, (B) 다음과 예시된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한 계좌 및 서비스의 제공과 무역거래에 관련된 활동의 수행. 1) 외국 및 국내의 법률, 규제 및 준법감시 요건(은행의 모회사에 적용되는 미국 자금세탁방지 준수 의무를 포함)의 준수, 은행, 은행 계열사 및 계열사의 대리인·대행인이나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외국 및 현지 정부와의 또는 정부간의 조약이나 약정의 준수, 2) 은행과 연락하는 또는 은행이 연락할 수 있는 고객 대표자의 신원 확인, 3) 리스크 평가, 정보 보안 관리, 통계, 추세 분석 및 계획 목적, 4) 서비스의 질, 교육, 조사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고객과의 통화 및 전자적 커뮤니케이션들의 감시 및 기록, 5) 범죄의 색출, 방지, 조사 및 기소, 6) 은행의 또는 은행 계열사의 권리 행사 및 보호, 7) 은행과 은행 계열사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고객과 고객 계열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은행의 고객과의 관계 관리, (C) 이 약관 제5조가 규정하는 목적

고객의 은행 기밀정보의 이용과 관련한 "허용된 목적"은 다음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 약관에 따라 그리고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계좌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권리를 행사 또는 보호하고, 그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며 고객의 은행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이용될 수 있는 정보, 또는 현지 개인정보 보호 법률 하에서의 이에 해당하는 용어나 가장 근접한 용어가 뜻하는 바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는 자동적인 방법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수집, 기록, 조직화, 저장, 개작 또는 변경, 검색, 상담, 이용, 전송·보급 기타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공개, 정렬 또는 결합, 차단, 삭제 또는 폐기와 같은 개인정보에 대해 수행하는 작업, 또는 현지 개인정보 보호 법률 하에서 이에 해당하는 용어나 가장 근접한 용어가 뜻하는 바를 의미합니다.

"수령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기밀정보를 수령하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관련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자연인이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지점을 의미합니다

(i) 고객이 회사인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객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ii) 고객이 파트너십(partnership)인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객의 수익, 이자,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자,

(iii) 고객이 미국 내국세법(United States Internal Revenue Code) 제671조에서 제679조까지에 있는 "위탁자 신탁"(grantor trust)이거나 국내외를 불문하고 어떤 나라의 법이든 그와 유사한 법률 하에서 이에 상응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 고객의 소유자로 취급되는 자,

(iv) 고객이 신탁인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객에 대한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

(v) 고객이 단체인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관계, 약정,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고객을 지배하는 자. 여기에는 (a) 신탁 재산의 위탁자, 관리인, 또는 수익자, (b) 궁극적으로 고객을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 (c) 기타의 수단을 통해 고객을 지배하는 자, (d) 고객의 고위 임원 등이 포함됩니다.

"대표자"는 당사자의 임원, 관리자, 직원, 대행인, 대리인, 전문가 자문역·고문 및 제3자 서비스 공급자를 의미합니다.

"보안사고"는 수령당사자가 보관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제공당사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밀

유지가 관련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합리적인 우려가 발생할 정도로 중대하게 지켜지지 못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제3자 서비스 제공자"는 수령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또는 수령당사자를 위해 수령당사자나 그 계열사에 의해 합리적으로 선택된,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합니다. 제3자 서비스 공급자의 예로는 기술서비스 제공자, 업무처리 위탁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콜센터 서비스 제공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무역거래"는 수입/수출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신용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급증서, 매출채권 양수도, 대출 또는 기타 금융을 포함하여, 고객과 은행 사이의 무역 관련 거래 또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